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27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정청래·김현정·장종태

박성준 · 김재원 · 장경태

한민수 · 김승원 · 박균택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슬픔도 회복하지 못하고,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명한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5조(배상명령) ①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	
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	
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	
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	
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	
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	
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다만, 제3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u>따른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미</u>
	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
	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에 규정된 죄
<u>3.</u> (생 략)	<u>4.</u> (현행 3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